

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5. 2. 14.>

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0일	
신 청 인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 (전화번호: /휴대전화:)				
대상 자연유산	명 칭				
	종 류		수량		
	소재지(보관 장소)				
보호구역 · 보호물					
행위유형	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,				
	[]	자연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·시설물을 설치·증설하는 행위			
	[]	자연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			
	[]	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			
	[]	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땅파기 행위			
	[]	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·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			
	[]	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·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			
	[]	자연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			
	[]	자연유산이 서식·번식·도래·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동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동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			
	[]	자연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,			
[]	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·경관적·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				
신청사항	위 치				
	내 용				
	사 유				
참고사항		※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,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.			
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	착수		소요경비		원 재원
	완료		그 밖의 사항		

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·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행위 계획서 1부 2.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. 다만,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가. 땅깍기·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·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: 배치도·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·횡단면도 나. 「건축법」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: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·횡단면도 3. 현장 사진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첨부 유의사항

행위 계획서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(용도·위치·대지면적 등), 지역·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, 건축물의 규모(건축면적·연면적·높이·층수 등),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